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

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
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「산업발전법」 제38조에”를 “「민법」 제32조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를”을 “한국석유화학협회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업무의 위탁기관)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“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 체”란 「산업발전법」 제38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<u>한국정밀화 학산업진흥회를</u> 말한다.	제10조(업무의 위탁기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「민법」 제32조에----- ----- ----- <u>한국석유화학</u> <u>협회를</u> -----.
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“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나 단체”란 「산업발전법」 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 국바이오협회를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「민법」 제32조 에----- ----- -----.